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 3차 본회의, 2021.12.08(수)10:00

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## 1. 제 안 자 : 배철현 의원 대표발의

## 2. 제안이유
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령군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.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.(안 제5조)
- 다.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사업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10조 ~ 제11조)

## 4. 관계법령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-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5조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8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9조는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,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